보험금 청구서 (인보험)

◆ 보험계약 인적사항 (해당 항목 □ 칸에 체크(√) 또는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 MG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														
		성 명			주민	번호			_			의료급여	수급권지	다 🗆
피브	보험자	휴대전호	+		_		_		즈	직업/직무				
주소														
※ 기존에 당사에 제공하			신 고객	니 신 고객정보와 상기 휴대전화,주소가			다른 경우 고객정보가 변경됨0			에 동의합니다.		예 🗆 아니오 🗆		
보험	보험계약자		주민번호			-					피보험자와 동일 □			
보상안내 받을분		피보험	보험자 □ , 계약자 □ , 기타 □			▶ 성명 :				l자의 ()		
		휴대전호	화				팩스	E-Mail						
			후대전화 문자(SMS)로 안내됩니다. 다른 방법으로 안내를 원하실 경우 아래 항목에 체크(√) 바랍니다.											
안	내방법 : 전	선자우편(E-	-Mail) [□ 팩스[_ <i>)</i>	너면(우편	면) 🗌							
				에 체크(√) 하시										
☞ 확인된 사고내용과 관련하여 정상 유지 중인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모든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 (일부 보험금 청구를 원하실 경우 사유와 청구하려는 보험금 등을 아래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주십시요.)														
	□ 질병		신체 L	배부요인으로 듣	응이 불편형	한 경우		상해	급격	우연한 외	래사고로 신체	를 다친 경우	2	
유형		의료비	병원에	입원,통원하0	여의료비를	를 지출형	출한 경우 시망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							
πο	세부 🗆			서 의사에 의하				□ 장해	_		병이 치유된 후 신체 훼손이 영구히 남은 경우			
		진단	특정 절	일병에 대해 진	단이 최종	확정 된	된 경우	□ 운전자	교통.	사고로 인히	l여 비용(벌금, #	허리비용 등)0	발생한	경우
세 	사고일 (발병일)			년	월	일	시	사고	장소					
부	사고	경위												
내 용	(6하 원칙			•					•					
0	*동일사고(병명))로 과거 청구가 있는 경우 전			민단명/증상	상 병원명			진료과목			
참	추가 청	J구여부	기존 청구 접수번호											
고	예 🗆	아니오 🗆												
사	교통 자동차보험)	고 예 □ 아니오 □				
항	사고 사고차량		<u>년호</u>					탑승위치	: 	2전석 □, 3	도수석 □, 뒷조	라석 □, 보행	중 🗆, 기	'I타 □
	잍	!부청구												
■ 다른	보험계익	사항 (손하	/생명	보험,공제,단체보	험 등) : 🤉	있음 🗆	없음 🗆							
보	.험(공제)회	사명	1 () 2()	3 ()
■ 보험금 수령 계좌 (□ 아래계좌 송금, □ 자동이체계좌 송금 단, 자동이체 계좌는 피보험자 본인 계좌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)														
금융	기관명				계좌번	[호					예금격	<u> </u>		
■ 청구자 확인사항														
1) 본인은 별지의 「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」을 통하여 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(담당부서 및 연락처, 지급절차, 예상 심사기간 및 지급기일 등)를														
안내받고 이를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. 2) <mark>본인이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</mark> ,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사가														
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'개인[신용]정보 처리 표준동의서'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														
작성	성일자	20		년 월		일		험금청구자 [!] 험자/수익자)			성 명		서	명
※ 보험사기(고의사고, 허위사고, 허위입원·진단·정해, 사고 후 보험가입 등)는 범죄행위이며,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														

- ※ **반드시 피보험자/수익자가 서명하시고**,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서명하며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부모 中 일방이 부모 공동명의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.
- ※ 접수하신 청구서류 일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여 드리지 않습니다.
- 보험금 청구서류 우편접수 : (07212)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, 이레빌딩(신관) 14층. MG손해보험㈜ 장기보험금 접수처
- 보험금 청구서류 팩스접수: 0505-088-1646, 1647, 1648, 1649

보험금 청구를 위한 개인(신용)정보 처리 표준동의서

MG손해보험주식회사 귀중

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 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- ※ '동의'란에 '√'체크 하십시오.

1. 개인(신용)성도 우십 • 이용에 판한 공의사항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□
3-11 1 3-13 1 3-
□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• 이용 목적 ○ 보험금지급 · 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○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 · 수납)
□ 수집 • 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O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정보(운전면허번호 포함)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주소 등), 계좌정보
O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[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]
 □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・이용 기간 ○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·이용하며, 별도 보관) 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「개인정보보호법」및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동의함 □
※ '업무수탁자'는 당사로부터 보험금지급,심사 및 보험사고조사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자 (당사로부터 지급심사 및 사고조사를 위탁받은 법인등)을 말합니다.
□ 개인(신용)정보 조회목적
○ 기리(천등)경도 교회국격 ○ 보험금지급 · 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□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 ○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
□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(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 · 이용 기간 ○ 수집 · 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 부쟂해격 민원처리 번력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 · 이용하며 벽도 보관한)

3.	개인(선	신용)정보의	제공에	관한 .	사항
----	------	--------	-----	------	----

당사 및 당사업무수탁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<mark>제공</mark>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----- **동의함** □

- □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 - 신용정보집중기관: 한국신용정보원
 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교통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
 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사, 손해보험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
 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(보험사고조사업체, 손해사정업체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, 의료자문 대행업체,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 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,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, 손해보험협회 등)
- □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 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(자동차보험에 한함) 등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(위탁업무 포함)
 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, 의료심사 및 자문, 구상금분쟁심의업무(자동차보험에 한함)
 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- □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 - O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· 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 (단.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)
- □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기간
 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)
 - ※ 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 [www.mggeneralins.com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

4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및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(질병·상해정보) 및 고유식별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·운전면허번호)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)하고자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

질병 · 상해정보 처리	동의함 🗆			
주민등록번호 · 외국인등록번호 · 운전면허번호 처리	동의함 🗆			
	20	년	월	일
도 이 지		14 0	4	

보험금 지급절차 안내문

□ 청구서류 제출 및 지급절차 안내

- O 보험금 청구는 사본 허용이 가능하나. 필요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
- O 사고 접수 완료 시 접수번호, 보상담당자의 이름 연락처를 유선 또는 휴대폰 문자(SMS, LMS, 카카오톡 등)을 통하여 알려 드립니다.
- O 보험금 지급절차

서류접수 (우편,방문) 보험금결정지급 보험금결정지급 기급안내

□ 손해사정사 선임 안내

O 고객님은 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해 별도의 손해사정사의 선임이 가능하며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.

손해사정사 선임 시 비용주체

○ 보험계약자 등 부담

- 보험회사가 고용 또는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사정한 결과에 보험계약자 등이 승복하지 아니한 때.
-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와는 별도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

○ 보험회사 부담

-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
-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(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)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
□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

O 상해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에 복수로 가입하신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계약별로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접수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타사에 접수 대행이 가능합니다. 단, 타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접수대행이 거절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가입하신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 접수하셔야 합니다.타 보험사에 가입이되어 있는 보험계약은 손해 · 생명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□ 보험금 부지급 및 재심사 청구

- O 보험금 지급심시 결과 감액지급 또는 부지급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드립니다., 지급심사 결과에 동의하시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팀으로 통보하시면 재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O 인터넷 접수: 홈페이지(http://mggeneralins.com)의 소비자광장 → 전자민원신청(VOC)을 통해 가능 / 전화상담: 소비자 보호팀 02)3788-2074
- O 우편 접수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35 엔지니어링공제빌딩 12층 소비자보호팀

□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 및 보험금 지연지급 안내

- O 보험금 예상 지급기일: 질병,상해에 관한 보험금은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,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영업일 이내, 재물·배상책임 사고는 지급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입니다.
- O 약관상으로 정해진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연사유, 지급예정일을 안내하여 드리며 지급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약관상 규정된 내용에 따라 지연이자를 산정 지급하여 드립니다.
- ㅇ 약관에서 정해진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□ 의료심사

O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. 제3자는 의료법 제3조(의료기관)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,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.

□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

O 상법 제662조(소멸시효)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. (단, 2015,3,12, 이전 청구사유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.)

□ 손해사정서 열람 또는 사본 교부

- O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손해사정사가 작성·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 드립니다. 단,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경미하고 보험사고 발생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 (보험업감독규정 제9-20조 제4항)
- O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손해사정사(업자)는 업무 수행 후 손해사정서를 청구권자에게 교부하고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.(손해사정서 작성한 경우) (보험업법 제189조)
- □ 보험금 지급심사 진행과정 및 결과는 자사 홈페이지(http://mggeneralins.com) 또는 콜센터(☎1588-5959)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,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보험금 청구 시 안내되는 담당자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분쟁 조정절차 및 피해 구제사항 안내

○ 문 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콜센터(☎ 1588-5959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☎1332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